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13 발의연월일: 2023. 7. 27.

발 의 자:이동주・민병덕・김용민

윤관석 • 양정숙 • 이장섭

박상혁 · 최기상 · 조오섭

우원식 · 서영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극한 호우 등 이전과 다른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후재난 피해는 도심·농어촌 가리지 않으며 피해규모도 과거보다 급증하고 있음.

현행 재난지원금은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농가·주택전파·주택수리비·농경지·농약대·대파대·가축입식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는 기후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재난피해 복구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난지원금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산정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가령 2023년 7월부터 재난지역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소상 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3 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2022년 태풍 한남노의 소상공인 피해규모가

업체당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60~70%로 추정되듯이 현행 산정기준 은 실제 피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난 지원금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피해 규모와 재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피 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 제4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중 "기준은"을 "하한액 기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 | |
| 조 등의 지원) ① ~ ③ (생 | 조 등의 지원) ① ~ ③ (현행 | | |
| 략) | 과 같음) | | |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u>기준</u> | ④ <u>하한</u> | | |
|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u>액 기준은</u> | | |
|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 | | | |
| 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 | | | |
| 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 | | | |
|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 | | |
|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 |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 |
| | <u></u> | | |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